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4.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14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9. 4.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수 병

가. 개정이유

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 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하고, (재)마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고 부칙 조항에 경과 규정을 두어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1) 합창단의 명칭 분리(제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2)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위탁 운영규정 마련(제3조)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마포문화재단에 위탁

3)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규정 마련(제7조)

- 합창단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
-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 합창단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2조2항)

- 2008년 8월 31일자 합창단 해촉 당시 단원이었던 자 중 만 55세 초과 단원이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오디션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립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구립합창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합창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포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체계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합창단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나이 제한은 그들이 가진 노하우, 경험, 경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으로 국가적, 사회적 낭비이며 결국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노령화를 더욱 재촉하므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철폐하고 실버관련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